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

| 심의일자 | 2018.12.18(화) | | |
|---|---|---|---|
| 사업명/신청위치 |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| | |
| 의결번호 | 2018-25-2 | 심의결과 | 보류의결 |

〔심의 내용〕 건축 심의

▣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「건축법」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〈 건축 분야 〉

### ☐ 건축계획

○ 주동 최상층을 연결하는 주민공동시설(스카이커뮤니티)은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, 인근지역 주민에세 개방 등 공공성 확보를 고려하여 삭제하거나 규모 축소, 위치 조정 등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.(대안 제시)

- 주변 저층 주거지와의 경관 고려.
- 한강변 경관시뮬레이션을 조망각, 시야범위, 인근 아파트와의 높이를 고려하여 수직적 위치 검토.
- 외장 마감재료와 연결된 주동의 입면재료를 단순한 수성페인트 마감 및 복층유리보다는 개선된 입면디자인 계획 검토.
- 스카이라운지를 연결하는 2개동의 최상단 높이를 주동 높이와 일치시키거나 몇개층 층수를 낮추고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검토.
- 주민공동시설(스카이커뮤니티) 하부 세대의 일조 환경 피해 및 단지내 입주민 사생활 침해 여부 검토.

○ 단지내 지형계획 개선을 위하여 각동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를 삭제하기 바람.

### ☐ 방재

○ 주민공동시설(커뮤니티시설)을 상부층에 계획하는 경우, 피난계단의 폭을 1.5m이상으로 계획하는 등 피난안전성 확보 바람.

○ 소방차량의 동선은 막다르지 않고,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하되 바닥 포장면은 32톤의 소방차량 운행에도 손상이 없도록 계획 바람. - 계속 -

**2018.12.18.**

**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**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

| 심의일자 | 2018.12.18(화) | | |
|---|---|---|---|
| 사업명/신청위치 |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| | |
| 의결번호 | 2018-25-2 | 심의결과 | 보류의결 |

〔심의 내용〕 건축 심의

〈 건축 분야 〉(계속)

□ 방재(계속)

○ 지하층의 주동 출입구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재검토하고 색채 사인 계획 반영하기 바람.

○ 지하층의 주동 출입구 앞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는 주차면 삭제 바람.

○ 주차장 램프 등 방화셔터의 설치는 일체형 방화셔터가 아닌 고정식 방화문을 별도로 설치 바람.

○ 소방시설 적용시 아나로그감지기의 전층 적용,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옥내소화전, 제연설비는 멀티센싱송풍기 회전수 제어 과압방지 적용바람. 끝.

2018.12.18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